

# 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」 개정 계획

(’22.5.30.〔월〕, 법무담당관)

## 1. 지침명

- 「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」(’22.2.7.)

## 2. 개정 이유

- 지침 제정·시행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

## 3. 주요 개정사항

### ① 납보위 심의 제외 대상 신설

- 현황: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임박한 수입신고 건 등에 대해 납보위 심의 요청
- 문제점: 지침상 납보위 심의가 수수세 발급 거부처분 전 절차라는 점 불명확, 납보위 심의 처리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불복\* 기회 상실 우려 등

\* 불복 제기 위해 세관장의 수수세 발급 거부처분 필요

- 개선방안: 납보위 심의 제외 대상 신설로 명확화

- ①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받은 수입신고 건
-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(납보위 처리기간 2개월 내 만료) 수입신고 건

### ② 대리인 위임장 서식 추가

- 요청인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 효력 명확화

## 4. 시행일 : 2022. 6. 1.